

Korea-Turkey FTA
Special Notes for Exporters
on Origin Declaration

한-터키 FTA

수출기업



원산지 신고서
주의사항 안내문



관 세 청
원산지지원담당관실

「한-터키 FTA」 수출물품 원산지 신고서 작성 주의사항 안내

- 최근 우리나라에서 터키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「한-터키 FTA」 원산지 검증 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.
- 특히, 터키 관세당국은 우리나라의 화학제품, 플라스틱 원재료, 섬유 제품에 대해 한국산이 맞는지 원산지 검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「한-터키 FTA」 수출검증 동향 및 주요 위반 사례별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.

* 한-터키 FTA는 원산지 증명을 수출자 스스로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·서명하는 '원산지 신고서' 자율발급 방식 채택

□ 최근 동향

- 터키 측으로부터 원산지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건수는 **669건**으로, 작년 같은 기간 동안의 63건에 비하여 **962% 급증**(20.4.15.기준)

□ 주요 특징

- 주로 한국산 **화학제품, 플라스틱 원재료, 섬유제품** 등을 제3국에 소재하는 중계업자가 **결제***하고 터키에 수출하는 경우, 제품이 직접 운송되었음에도 **우회수출로 의심**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

* 한-터키 FTA는 제3국 거래를 허용하나, 터키 관세당국은 한국의 수출자가 아닌 FTA 비당사국에 소재하는 중계업자가 발행한 제3국 송장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·서명한 경우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고 있음

- 아울러 터키 관세당국은 수입통관 후 원산지 검증을 하는 경우, FTA 관세혜택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수입자에게 관세차액의 3배에 해당하는 **벌금을 부과**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

□ 주요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

1	협정의 비당사국인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이 발행한 상업송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한 경우
<p>☞ [주의사항] 한-터키 FTA는 제3국 발행 송장을 허용(협정문 제27조)하나, 원산지 신고 문구는 협정의 당사자인 국가(한국, 터키)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작성(협정문 제17조)되어야 합니다.</p> <p>※ (사례) 한국 수출자 000은 패킹리스트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적정하게 작성했음에도, 제3국 소재 판매자 □□□는 자신이 발행한 상업송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 ⇨ 제3국 발행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가 기재되어 원산지 신고서는 부적정</p>	
2	원산지 신고 문구에 불필요한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경우
<p>☞ [주의사항] 한-터키 FTA의 경우 협정문에 인증수출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증수출자번호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.</p> <p>※ (사례) 한국 수출자 000은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하면서 한-EU FTA에 따라 부여받은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 ⇨ 한-터키 FTA에는 인증수출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원산지 신고서는 부적정</p>	
3	원산지 신고 문구(원산지 신고서)를 반복하여 사용한 경우
<p>☞ [주의사항] 원산지 신고서는 재사용이 불가하며, 개별 수출건마다 별도의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</p>	
4	원산지 신고서가 협정에서 요구한 방식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
<p>☞ [주의사항] 협정 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하고, 장소, 일자, 서명자 이름, 수출자 수기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</p>	